

<p>• 용도지역변경: 일반상업지역→일반주거지역 (4,080㎡)</p> <p>• 주민의견 청취결과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강남구 삼성동 74 일대 경기고등학교 동측도로변 4,080㎡의 현재의 일반상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은,</p> <p>○이 지역은 경기고등학교 부지이며 도로에 따라 길게 옹벽이 설치되어 상업지역으로 는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되어 지역실정에 맞게 이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한 변결결정안으로 사료됨.</p> <p>5. 심사결과</p> <p>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1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</p> <p>2. 제안이유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위치: 강남구 개포동 614 일대</p> <p>○내용</p> <p>• 용도지역변경: 준주거지역→일반주거지역 (6,900㎡)</p> <p>• 주민의견 청취결과: 없음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강남구 개포동 614 일대 6,900㎡의 현재의 준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은,</p> <p>○이 지역이 이미 건축된 개포 현대아파트 내에 있는 부지로서, 준주거지역의 기능이 상실된 이 토지를 현실에 맞게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은 타당한 변결결정안으로 사료됨.</p> <p>5. 심사결과</p> <p>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2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</p>	의안 번호	71	의안 번호	72	<p>2. 제안이유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위치: 강남구 일원동 626 일대</p> <p>○내용</p> <p>• 용도지역변경: 준주거지역→일반주거지역 (6,100㎡)</p> <p>• 주민의견 청취결과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강남구 일원동 626 일대 6,100㎡는 현재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, 이미 건축되어진 삼성사원아파트 부지로서, 이미 준주거지역의 기능이 상실되어 지역현황에 맞게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서,</p> <p>○지역현실에 맞도록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안으로 사료됨.</p> <p>5. 심사결과</p> <p>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류 (17건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: 오류2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: 오류2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위치: 구로구 오류동 14-50번지 일대</p> <p>○내용</p> <p>• 면 적: 12,888㎡(사유지 10,762㎡, 국·공유지 2,126㎡)</p> <p>• 건축물: 78동(유허가 66동, 무허가 12동)</p> <p>• 가구수: 226세대(가옥주 76, 세입자 150)</p> <p>• 도시계획사항: 일반주거지역, 주차장정비 지구</p> <p>• 주민동의율: 토지 77%, 건물 82%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	의안 번호	18
의안 번호	71						
의안 번호	72						
의안 번호	18						

○구로구 오류동 14~50번지 일대 국·공유지 2,126㎡와 사유지 10,762㎡ 등 12,888㎡의 토지에 대하여 신규로 오류 제2주택개량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  
 ○예정구역 내에는 91필지의 사유지가 있고, 또 구역 내에는 78동의 주거용 건물이 있으나 평수가 적은 소필지가 대부분이고 지상건물도 10년 내지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건물의 밀집지역으로, 지역 내에는 226세대가 거주하고 있음.  
 ○이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지역 내 차량통행이 어렵고, 상·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개별건축이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들이 토지는 77%, 건물은 82.4%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,  
 ○이 지역의 토지 이용도를 제고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요구의사와 같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도록 동의 의견임.

5. 심사결과

보류

의안 번호	20
----------	----

1. 건 명 : 상도 제9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
2. 제안이유 : 상도 제9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(일부해제)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3. 주요요지
  - 위치 : 동작구 상도동 산 64-39번지 일대
  - 내용
    - 면 적 : 11,886㎡(사유지 11,886㎡)
    - 건축물 : 13동(유허가 1동, 무허가 12동)
    - 세대수 : 33세대(가옥주 13, 세입자 20)
    -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
    - 주민동의를
      - 토지면적 11,886㎡ : 동의 10,530㎡ (88.5%)
      - 토지소유자 34명 : 동의 32명(94.1%)
      - 건물소유자 13명 : 동의 13명(100%)
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

○본 재개발구역 변경결정안은 '73.12에 구역 지정되었다가 '82.4에 구역이 변경결정된 바 있는 동작구 상도동 산 64-39번지 일대 기정정된 26,729㎡의 재개발구역 중 11,886㎡를 해제하여 14,843㎡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안임.  
 ○본 구역은 사업시행 단계에서 일부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들이 기정 재개발구역에서 벗어나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조합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토지주의 88.5%의 동의를 받아 구역을 해제하고자 한 것으로 구역 변경안에는 동의 의견임.  
 ※변경구역에 대한 도면을 보면, 구역 해제지역에 조합주택을 건설하여 존치지역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나, 존치지역이 지형상 장방형을 이루고 있고, 고지대에 아파트를 건축할 시 스카이라인 조정 등 다소 어려운 문제점이 예상되어 사업시행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.

5. 심사결과

보류

의안 번호	59
----------	----

1.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
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3. 주요요지
  - 위치 : 노원구 월계동 794 산 3-1
  - 내용
    - 면적 : 1,621,000㎡→1,623,809㎡(증 2,809㎡)
    - 도시계획사항 : 자연녹지지역
    - 공람공고중 의견접수 : 없음.
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
  - 본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은 노원구 월계동 794와 산 3-1에 있는 기존 월계근린공원의 불합리한 공원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당초 공원면적 1,621,000㎡를 1,623,809㎡(증 2,809㎡)로 변경하고자 한 것이며,
  - 본 공원경계 조정과 관련하여 공원과 인